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57 발의연월일: 2021. 11. 5.

발 의 자: 박성민·강민국·김선교

김영식 · 김형동 · 서정숙

송석준 · 정운천 · 태영호

하영제 • 배준영 • 곽상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 집단에 너지 공급시설의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 집 단에너지 사용자 설비를 보수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법률 제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를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	
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	활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
<u>에게</u>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
수 있다.	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	
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	
여야 <u>한다</u> .	<u>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
	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
	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
	<u>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